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11920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7. 8. 접수 제37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2. 26.부터 2020. 6. 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출하였고, B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20. 7. 7.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을 기준으로 2,378,537,000원이다.

나. B와 피고의 증여계약

B는 2001. 4.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B는 2020. 7.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7. 8.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주식회사 D,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B는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2020. 7. 7.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B와 별거하던 중 그동안 희생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세입자의 보증금, 증여세와 등기비용 전부 부담)로 이전받았다. B는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피고의 노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돕고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것은 위에서 보았다.

이러한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목 목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232.565㎡ 2층 1225.005㎡ 3~19층 1221.225㎡ 20층 1022.625㎡ 지하 1227.1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대 197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84.9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9722000분의 38181

끝.

